부천시 보도구역안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9년 8월 21일 부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9년 8월 21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5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2009년 9월 3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도로과장　김정수)

□ 제안이유

○ 「도로법」이 전부개정(법률 제8976호, 2008. 3. 21.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 법문장 표기의 한글화 및 어려운 용어를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시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도로법」개정으로 조 번호가 변경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조문을 정비함.(안 제1조)

・ 「도로법」제64조 → 제76조

3. 주요질의 및 답변 요지

○ 없　　음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　음

나. 반대토론 : 없　음

5. 심사결과

○ 원안의결

6.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부천시보도구역안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보도구역안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부천시보도구역안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를 “부천시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보도구역안”을 “보도구역내”로 하고, “도로법”을 “「도로법」”으로 하며, “제64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76조에 따른”으로 하고, “공사시행명령”을 “공사시행 명령”으로 하며, “부과 징수에 관하여”를 “부과·징수에”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도구역”이란 도로 구역 중 차도를 제외한 인도로 사용되는 구역을 말한다.
2. “횡단차도”란 차량의 출입을 위하여 보도구역을 횡단하여 차도에 진입하는 차량통행로를 말한다.
3. “원인자”란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하여 별도로 도로공사를 필요로 하게 한 해당 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로서 다음 각 호의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가. 주유소

   나. 주차장

   다. 자동차 정류장

라. 자동차 수리장

마. 자동차 세차장

바. 그 밖에 횡단차도를 설치하는 각종 영업소

제3조제1항 중 “보도구역안”을 “보도구역내”로 하고,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의한”을 “따른”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하며, “20일이내”를 “20일 이내”로 한다.

제4조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원인자”를 “공사 원인자”로 하며, “시공할 때에 관할 시장”을 “시공할 때에는 시장”으로 한다.

제5조 중 “기간내”를 “기간 내”로 하고,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중 “부과징수”를 “부과·징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며, “7일이내”를 “7일 이내”로 하고,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같은 조 제2항 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하고, “15일이내”를 “15일 이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천시보도구역안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470호
의 결 년월일	2009. 9. 8. (제154회)

제출년월일 : 2009. 8. 21.

제 출 자 : 부 천 시 장

□ 제안이유

○ 「도로법」이 전부개정(법률 제8976호, 2008. 3. 21.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 법문장 표기의 한글화 및 어려운 용어를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시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도로법」개정으로 조 번호가 변경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조문을 정비함.(안 제1조)

・ 「도로법」제64조 → 제76조

부천시보도구역안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보도구역안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부천시보도구역안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를 “부천시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보도구역안”을 “보도구역내”로 하고, “도로법”을 “「도로법」”으로 하며, “제64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76조에 따른”으로 하고, “공사시행명령”을 “공사시행 명령”으로 하며, “부과 징수에 관하여”를 “부과·징수에”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도구역”이란 도로 구역 중 차도를 제외한 인도로 사용되는 구역을 말한다.
2. “횡단차도”란 차량의 출입을 위하여 보도구역을 횡단하여 차도에 진입하는 차량통행로를 말한다.
3. “원인자”란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하여 별도로 도로공사를 필요로 하게 한 해당 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로서 다음 각 호의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가. 주유소

   나. 주차장

다. 자동차 정류장

라. 자동차 수리장

마. 자동차 세차장

바. 그 밖에 횡단차도를 설치하는 각종 영업소

제3조제1항 중 “보도구역안”을 “보도구역내”로 하고,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의한”을 “따른”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하며, “20일이내”를 “20일 이내”로 한다.

제4조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원인자”를 “공사 원인자”로 하며, “시공할 때에 관할 시장”을 “시공할 때에는 시장”으로 한다.

제5조 중 “기간내”를 “기간 내”로 하고,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중 “부과징수”를 “부과·징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며, “7일이내”를 “7일 이내”로 하고,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같은 조 제2항 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하고, “15일이내”를 “15일 이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부천시보도구역안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	**부천시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도구역안 횡단차도 설치에 적용할 도로법 제31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의 기준과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보도구역내----------「도로법」----------제76조에 따른----------공사시행 명령의----------부과·징수에----------.
제2조 (정의) ①“보도구역”이라 함은 도로 구역중 차도를 제외한 인도로 사용되는 구역을 말한다. ②“횡단차도”라 함은 차량의 출입을 위하여 보도구역을 횡단하여 차도에 진입하는 차량통행로를 말한다. ③“원인자”라 함은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공사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하여 별도로 도로공사를 필요로 하게 한 당해 타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로서 다음 각호의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도구역”이란 도로 구역 중 차도를 제외한 인도로 사용되는 구역을 말한다. 2. “횡단차도”란 차량의 출입을 위하여 보도구역을 횡단하여 차도에 진입하는 차량통행로를 말한다. 3. “원인자”란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하여 별도로 도로공사를 필요로 하게 한 해당 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로서 다음 각 호의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현 행	개 정 안
1. 주유소 2. 주차장 3. 자동차 정류장 4. 자동차 수리장 5. 자동차 세차장 6. 기타 횡단차도를 설치하는 각종 영업소	가. 주유소 나. 주차장 다. 자동차 정류장 라. 자동차 수리장 마. 자동차 세차장 바. 그 밖에 횡단차도를 설치하는 각종 영업소
제3조 (원인자에 대한 시행명령) ①보도구역안에 횡단차도를 설치할 때에는 시장은 도로의 손괴 예방과 보전을 위하여 당해 원인자에게 별표 시공기준에 의한 횡단차도 설치 공사의 시행을 명령할 수 있다. ②전항의 공사 시행 명령을 받은 공사 원인자는 명령서 접수일로부터 20일이내에 횡단차도 설치 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3조(원인자에 대한 시행명령) ① 보도구역내----------해당 ----------따른----------. ② 제1항----------20일 이내에----------.
제4조 (원인자에 의한 공사시행) 제3조의 공사시행 명령에 의하여 그 원인자가 직접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시공할 때에 관할 시장으로부터 공사시행 허가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4조(원인자에 의한 공사시행) ----------따라 -공사 원인자----------시공할 때에는 시장----------.
제5조 (공사대행과 비용부담) 공사시행명령을 받은 원인자가 제3조2항에 규정한 기간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은 당해 공사를 대행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그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5조(공사대행과 비용부담) ----------기간 내---------- -- 해당----------.

현 행	개 정 안
제6조 (비용의 부과징수) ①제5조에 의한 대행공사의 비용은 시장이 공사완료후 7일이내에 그 공사에 소요된 실비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당해 원인자에게 납부고지한다. ②전항의 비용 납부고지를 받은 원인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그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비용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6조(비용의 부과・징수)① -----따른 ---------- 7일 이내---------해당 ----------. ② 제1항----------15일 이내----------. ③ ---------- 따라 ----------.
제7조 (규칙) 기타 이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